

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2025. 3. 24.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경 과

의안 제500호로 2025년 3월 10일 임헌호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병역명문가 및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주차장 이용료를 감면해줌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구민의 노고에 감사하고,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별표1 비고 중 면제 대상 추가(별표1 비고 제25호)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5.03.11.~2025.03.18.)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병역명문가의 주차비 할인율을 확대하고,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주차비를 감면하여 성실히 국토방위의 임무를 다한 구민을 예우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 주요 내용으로

- 안 별표1은 병역명문가의 주차비 할인율을 상향(20%→30%)하고,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주차비 감면(30%)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병역명문가 주차비 할인율 확대 ▲장기복무제대군인 주차비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임.
- 먼저, 서울시 타 자치구의 병역명문가 주차비 할인율을 살펴보면, 30%이상 할인하는 자치구는 14개로 절반 이상에 해당되며, 할인율을 20%→30%로 확대하는 것은 타 자치구들이 정하는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타당하다고 보임.

서울시 타 자치구 병역명문가 주차비 할인율 현황	
할인율	자 치 구
20%(10개)	- 성동, 동대문, 서대문, 마포, 양천, 구로, 서초, 송파, 강동, 은평 ※서대문구, 송파구 부설주차장 할인율은 30%임
30%(10개)	- 중, 용산, 광진, 중랑, 성북, 노원, 강서, 금천, 동작, 관악
50%(2개)	- 종로, 도봉
80%(2개)	- 강북, 강남

1)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는 약 191가문(950명)임.

- 한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항2)에 따라 지자체는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지니며, 2022년 9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sup>3)</sup> 제32조(공공시설의 이용) 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비를 감면하는 것은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됨.

---

2)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고용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제32조(공공시설의 이용)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체육시설의 이용요금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할 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참고 자료

## 1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의3에 따라 선정된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역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63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2.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3. "병역명문가 대표"란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신청서에 가문대표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제24조(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정책 관련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의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
2.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등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3. 병역명문가 문패 제작·배포
4. 그 밖에 병역명문가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免役)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2. “장기복무 체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3. “중기복무 체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4. “의무복무 체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되,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임용된 경우의 군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兵)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그 인력의 개발·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대군인의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고, 복무 중에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대군인의 고용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체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이나 그 인력 개발 및 활용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공공시설의 이용)**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체대군인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은 별표 2

와 같다.

②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체육시설의 이용요금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